

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

(’26. 4. 12. 게시)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‘기존 운임’의 정의	(컨테이너) 제3호 (시멘트) 제4호	-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 협의 운임을 적용하던 중 안전운임이 고시된 경우, 협의 운임이 ‘기존 운임’에 해당 - 기존에 안전운임으로 고시된 운임이 변경 고시되면서 인하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
복화 운송 정의	(컨테이너) 제10호	- 수입·수출 배차를 조정하여 왕복 운행 시 상행·하행 모두 화물을 실은 적(full) 컨테이너 상태로 운송하는 형태 ☞ (예시) 기점A에서 출발(full)하여 종점B에 내품 (가)를 하차하고, 동일 컨테이너(empty)를 싣고 C지점으로 이동하여 내품 (나)를 싣고 기점A로 이동 ☞ 기점A에서 출발(full)하여 종점B에 컨테이너(가)를 하차하고, C지점으로 이동하여 컨테이너(나)를 싣고 기점A로 이동
복화 수송 정의 (신설)	(시멘트) 제13호 사목	- 동일 화주에 의한 동일구간 수송하는 형태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할증률 가산 예시 (개선)	(컨테이너)제22 호	- (예시①) 화약류(100%) + 중량물(40%) + 공휴일(20%) ☞ 100%(가장 높은 할증률) + 20%(중량물 1/2) + 10%(공휴일 1/2) = 130% 적용 - (예시②) 화약류(100%) + 중량물(80%) + 공휴일(20%) + 심야(20%) ☞ 제22호 나 의거 100%(가장 높은 할증률) + 40%(중량물 1/2) + 10%(공휴일 1/2) = 150% 적용 ※ 할증률 높은 순서대로 3개만 적용
할증률 가산 예시	(시멘트) 제3장 제12호	- (예시①) 시멘트(100%) + 중량물(40%) + 공휴일(20%) + 심야(20%) ☞ 100%(가장 높은 할증률) + 20%(중량물 1/2) + 10%(공휴일 1/2) + 10%(심야 1/2) = 140% 적용 - (예시②) 시멘트(100%) + 중량물(80%) + 공휴일(20%) + 심야(20%) ☞ 100%(가장 높은 할증률) + 40%(중량물 1/2) + 10%(공휴일 1/2) + 10%(심야 1/2) = 160% 이지만, 가장 높은 할증률 100%에 50%p를 더한 상한 150%를 초과하므로 150%만 적용
COMBINE 운송운임 적용기준	(컨테이너) 제3장제11호 다목, 라목	- 별도 조건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, 동일 화주가 배차하고 동일 장소 (터미널·화주 공장·CY 등)에서 상·하차하는 경우 적용함이 바람직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																				
컨테이너 중량물 할증 적용 기준과 예시	(컨테이너) 제23호 가목	- 내 품 기준(팔레트 등 포장재 포함)이며 서류(B/L) 상 기재 중량으로 확인, 기재 중량이 없는 경우 계근한 내 품 중량 적용						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40FT</td><td>20FT</td><td>할증률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중량 할증 기준</td><td>23톤 초과~24톤 이하</td><td>20톤 초과~21톤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24톤 초과~25톤 이하</td><td>21톤 초과~22톤 이하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25톤 초과~26톤 이하</td><td>22톤 초과~23톤 이하</td><td>30%</td></tr><tr><td>26톤 초과~27톤 이하</td><td>23톤 초과~24톤 이하</td><td>40%</td></tr><tr><td>...</td><td>...</td><td>...</td></tr></table>	구분	40FT	20FT	할증률	중량 할증 기준	23톤 초과~24톤 이하	20톤 초과~21톤 이하	10%	24톤 초과~25톤 이하	21톤 초과~22톤 이하	20%	25톤 초과~26톤 이하	22톤 초과~23톤 이하	30%	26톤 초과~27톤 이하	23톤 초과~24톤 이하	40%	...	...	...
		구분	40FT	20FT	할증률																	
		중량 할증 기준	23톤 초과~24톤 이하	20톤 초과~21톤 이하	10%																	
			24톤 초과~25톤 이하	21톤 초과~22톤 이하	20%																	
			25톤 초과~26톤 이하	22톤 초과~23톤 이하	30%																	
26톤 초과~27톤 이하	23톤 초과~24톤 이하		40%																			
...	...		...																			
활대품 할증 적용 예시	(컨테이너) 제23호 나목	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길이 초과</td><td>할증률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폭/길이/높이</td><td>10cm 초과~20cm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20cm 초과~30cm 이하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30cm 초과~40cm 이하</td><td>30%</td></tr><tr><td>40cm 초과~50cm 이하</td><td>40%</td></tr><tr><td>...</td><td>...</td></tr></table>	구분	길이 초과	할증률	폭/길이/높이	10cm 초과~20cm 이하	10%	20cm 초과~30cm 이하	20%	30cm 초과~40cm 이하	30%	40cm 초과~50cm 이하	40%	...	...						
		구분	길이 초과	할증률																		
		폭/길이/높이	10cm 초과~20cm 이하	10%																		
			20cm 초과~30cm 이하	20%																		
			30cm 초과~40cm 이하	30%																		
			40cm 초과~50cm 이하	40%																		
...	...																					
탱크 컨테이너 할증 관련 질의	(컨테이너) 제23호 다목	- 상행과 하행 모두 공 컨테이너 운송 시 : 할증 미적용																				
		- 위험물과 탱크 컨테이너 중복 적용 : 가능(30%+15%=45%)																				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냉동·냉장 컨테이너 할증 관련	(컨테이너) 제23호 마목	- 냉동 발전기 부착 샤시를 운수사업자가 제공 시, 운수사업자가 수취하는 할증 50%의 의미 : 안전위탁운임에 대한 할증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, 안전위탁운임에 적용되는 30% 할증의 절반이 타당 - 발전기 미부착 샤시로 냉동냉장장치 미가동 시 : 할증 미적용 - 발전기 부착 샤시로 냉동냉장장치 미가동 시 : 할증 적용 (현행 조항은 발전기 부착 시 장치 가동여부와 무관하게 할증 적용) - 상행 하행 공컨테이너 운송만 하는 경우 : 할증 미적용 - 발전기 부대비용 부담 주체 : 상호 협의사항
공휴일·심야 할증 기준	(컨테이너) 제23호 자·차목 (시멘트) 제13호 다·라목	- 부대조항에 기재된 “작업 또는 운행”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최초 컨테이너 상차지에 도착하여 상차작업을 완료한 이후부터 작업지에서 내품 상차 또는 하차 작업 후, 최종 컨테이너 하차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“작업 또는 운행”의 기준으로 함 ② 해당 “작업 또는 운행”시간이 공휴일 또는 심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“작업 또는 운행”시간 중 공휴일 또는 심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운임 할증 적용 (예시 : 평일 작업·운행시간 8시간 중 2시간이 심야(22:00~06:00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%의 1/4인 5%의 할증 적용)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대기료 지급 기준	(컨테이너) 제24호 차목 (시멘트) 제14호 사목	- 작업 전일 컨테이너 상차 시 발생하는 대기료 청구 가능여부 ☞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시간 이전에 발생한 대기과 그에 대한 대기료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며, 동일한 증빙자료 필요(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 입·출입카드 내역서 등) * 대기료 증빙자료(양식) 붙임서식 참조
검색대 통과에 필요한 부수업무 비용 부담 주체 (개선)	(컨테이너) 제25호	- 차주가 검색대 통과 할증비용 100,000원은 검색대 통과 시 소요되는 비용을 운수사업자가 지급한다. - 다만, 증빙(영수증) 제출 후 화주가 실비 정산하는 등 차주가 검사 관련 비용을 반환받는 것으로 협의된 경우는 예외로 함
인천기점 할증 적용방법	(컨테이너) 제23호 키목	- 「'26년 안전운임 고시」 제1호 가목 거리별 운임표 상 안전위탁운임에 20%의 할증 운임을 가산하고, 안전운송운임에는 안전위탁운임 할증으로 추가된 금액만큼 가산 - (예시) 구간거리 100km의 경우, 40FT 컨테이너 기준 안전운임 안전위탁운임 : 333,700원의 20%인 66,700원을 가산 → <u>400,400원</u> 안전운송운임 : 376,800원에 66,700을 동일하게 가산 → <u>443,500원</u>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평택기점 할증 적용방법	(컨테이너) 제23호 하목	- 「'22년 안전운임 고시」 제1호 가목 거리별 운임표 상 안전위탁운임에 18%의 할증 운임을 가산하고, 안전운송운임에는 안전위탁운임 할증으로 추가된 금액만큼 가산 - (예시) 구간거리 100km의 경우, 40FT 컨테이너 기준 안전운임 안전위탁운임 : 333,700원의 18%인 60,100원을 가산 → <u>393,800원</u> 안전운송운임 : 376,800원에 60,100을 동일하게 가산 → <u>436,900원</u>
위험물 운송 관련	(컨테이너) 제23호 파목	-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, 추가로 발생하는 총 운행거리의 1/2을 구간거리로 하는 ‘거리별 운임’을 산정하고 위험물 할증 적용
밥테일 운송 관련	(컨테이너) 제12호	- 밥테일 운송 시 차량의 왕복운행 횟수에 따라 1회 왕복 시 왕복운임의 100%, 2회 왕복 시 왕복운임의 200%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해당 운임 적용 기준(100%, 200%)은 할증으로 보기 어려움 - 할증이 적용되는 다른 운송조건으로 밥테일 운행 시, 해당 할증률에 해당하는 할증을 적용하여야 함(예시 : 위험물 운송 시 30% 적용) 아울러, 2회의 운송 중 1회의 운송이 별도 할증이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, 할증 원인이 발생한 운송 1건에 대해서만 할증 적용
배차 취소료가 적용되지 않는 천재지변의 기준	(컨테이너) 제12호	- 기상청의 기상경보(대설·태풍 경보 등) 발표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를 천재지변의 기준으로 함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운수사업자의 화물차주 대상 주차장 비용 공제 가능 여부	(컨테이너) 제13호 (시멘트) 제11호	-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지급 후 주차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. - 단, 운수사업자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더라도 화물차주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료 공제는 불가.
샤시 임차료 관련	(컨테이너) 제14호	- 화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로부터 샤시를 임차하는 경우 외에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 간 샤시 임차·임대에 대한 사항은 부대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간 샤시를 임차·임대할 경우 그 사용에 따른 비용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지급함
손상 컨테이너 셔틀운임 관련	(컨테이너) 제15호 나목	- 셔틀운임 지급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, 현실적으로 화물차주가 운송계약 및 거래단계를 뛰어넘어 원인제공자(선사 또는 화주)에게 손상된 컨테이너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므로, 화주 → 운수사업자 → 화물차주 등의 해당 운송계약 및 운임지급 체계를 따라 셔틀운임이 최종적으로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도록 함이 바람직 (* 항내 공 컨테이너의 관리 책임 주체는 선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) - 손상 컨테이너 셔틀운임 20,000원은 손상 컨테이너 교체를 위한 대기 및 상·하차, 운송에 대한 비용임
손상 컨테이너 교체 관련	(컨테이너) 제15호 다목	- 화주공장 도착 후 손상컨테이너에 대한 배차 취소 시, 선사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왕복운임의 80%에 해당하는 비용과 별도로 배차취소료를 중복으로 청구하여 수취하는 것은 중복수취로 판단됨 - 손상 컨테이너 교체와 별도로,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에 맞게 화주공장 도착 후 대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기료 지급이 바람직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공차 운행 관련	(컨테이너) 제14호	- 효율적인 운송을 유도하고 요구 운행구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차주에 대한 무리한 배차를 지양하고자 10km 이상의 조건을 두고 공차 운행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 - (예시①) 컨테이너 하차 후 화주나 운수사의 오더 수행을 위한 공차 운행 (예시②) 기점이 아닌 곳에서 공컨테이너를 픽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차 복귀운행 ☞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요구로 10km 이상의 공차 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, ①과 ② 모두 해당 부대조항을 적용하고, 비용(왕복 운임의 50%)은 공차 운행을 요구한 주체가 지급함이 타당 - 출근을 위해 자택/주차장에서 기점까지 공차로 운행하는 거리는 공차 운임에 해당하지 아니함
철도CY 직송운송 관련	(컨테이너) 제17호	- 화물차주의 직전 운행이 철도CY에서 종료되고 기점(차고지)으로 복귀 시 철송장에 장치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CY 직송 운송으로 왕복운임의 50% 적용 가능
비규격 컨테이너 관련	(컨테이너) 제20호	- 안전운임이 고시된 40FT·20FT DRY 컨테이너 외 화주사가 제작한 특수 규격의 컨테이너 운송 운임은 화주, 운수사업자, 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함
선박이용료 (신설)	(컨테이너) 제27호	- 도선에 따른 선박 왕복 이용료, 대형교량 왕복 통행료(예: 인천대교, 영종대교, 거가대교 등), 인천공항 주차료가 발생하는 구간은 운임에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함
거리 측정방식①	(컨테이너) 제35호	- A항만 → (운행거리①) → B(반입/반출) → (운행거리②) → C항만 → (운행거리③) → A항만(복귀) ☞ 운행거리 (①+②+③)/2 를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 적용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거리 측정방식②	(컨테이너) 제35호	- A항만 → (운행거리①) → B(일부 반출) → (운행거리②) → C(일부 반출) → (운행거리③) → A항만(복귀) ☞ 작업지 B, C의 화주가 동일한 경우, 운행거리 $(①+②+③)/2$ 를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 적용 ☞ 작업지 B, C의 화주가 다른 경우, 운행거리 ①을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과 운행거리 ③을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을 각각 지급하고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
거리 측정방식③	(컨테이너) 제35호	- A항만 → (운행거리①) → B(일부 반출) → (운행거리②) → C(일부 반출) → (운행거리③) → D항만 → (운행거리④) → A항만(복귀) : 작업지 B, C의 화주가 동일한 경우, 운행거리 $(①+②+③+④)/2$ 를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 적용 : 작업지 B, C의 화주가 다른 경우, (A→B→D→A) 구간 운행거리의 1/2을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과 (A→C→D→A) 구간 운행거리의 1/2을 구간거리로 하는 왕복운임을 각각 지급하고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유가반영 (개선)	(컨테이너) (시멘트)	-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반영 가. 2026년 1월 1일~2026년 3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가 안전운임 산정시 적용된 2025년 10월 1일~2025년 12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, 2026년 1월 1일~2026년 3월 31일(3개월)의 평균유가를 2026년 5월~7월에 적용한다. 2026년 1월 1일~2026년 3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5년 10월 1일~2025년 12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, 2025년 10월 1일~2025년 12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를 2026년 5월~7월에 그대로 적용한다. 나. 2026년 4월 1일~2026년 6월 30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6년 5월~7월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26년 4월 1일~2026년 6월 30일(3개월)의 평균유가를 2026년 7월~9월에 적용한다. 2026년 4월 1일~2026년 6월 30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6년 5월~7월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, 2026년 5월~7월에 적용된 유가를 2026년 7월~9월에 그대로 적용한다.

구분	관련 부대조항	질의 세부내용 및 답변
유가반영 (개선)	(컨테이너) (시멘트)	다. 2026년 7월 1일~2026년 9월 30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6년 7월~9월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26년 7월 1일~2026년 9월 30일(3개월)의 평균유가를 2026년 10월~12월에 적용한다. 2026년 7월 1일~2026년 9월 30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6년 7월~9월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, 2026년 7월~9월에 적용된 유가를 2026년 10월~12월에 그대로 적용한다. 라. 2026년 10월 1일~2026년 12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6년 10월~12월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26년 10월 1일~2026년 12월 31일(3개월)의 평균유가를 2027년 1월~3월에 적용한다. 2026년 10월 1일~2026년 12월 31일(3개월) 평균유가가 2026년 10월~12월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, 2026년 10월~12월에 적용된 유가를 2027년 1월~3월에 그대로 적용한다.